

검토의견서

【복지정책과】

제명 :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공포안

1. 제안이유

상위법인 「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」에 따라 현행 조례의 제명을 바꾸고, 상위법령을 인용하여 조례의 근거를 명확히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제명을 “서울특별시 성북구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”를 “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”로 제명 변경
- 나. 목적에 상위법령을 인용하여 조례의 근거를 명확히 함(안 제1조)
- 다. 주민생활국장을 해당 소관국장으로 변경(안 제 7조)

3. 검토의견

구의회에서 의결되어 우리구로 이송되어 온 안과 같이 공포·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26조(조례와 규칙의 제정 절차 등)
 - ① (생략)
 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례안을 이송받으면 20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.
 -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제2항의 기간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하고,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.
 - ④~⑨ (생략)